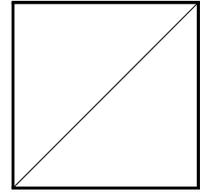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3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20. 4. 24. 및 '20. 10. 16.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기업이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만기 연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하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4)^{*1}와 73^{*2}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실무적 혼란 해소 필요

*1)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후략)

- 개정안에서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관련 규정 등을 종전보다 구체화하였음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명확화

- 현행기준에 따르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계약사항(covenant)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권리'라고 보기 어려움

- 개정안에서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으려면, 보고 기간말에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 기대' 미고려 명확화

- 현행기준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발생될 계약사항 위반, 조기상환과 같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개정안에서는, 기업(채무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 개정안에서는, 부채가 ① 현금 이전, ② 재화나 용역 제공, ③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즉,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침
- 다만,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 (제1032호 적용)하고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주계약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시행일

-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 개정 기준은 계약사항 준수를 채권자가 요구한다는 통상의 대출 관행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부채의 유동성 분류시 보다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
 - 한편, 기업은 통상적으로 차입 약정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개정내용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 기대' 미고려 명확화

- 기업은 통상 실무적으로 기말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유동성 분류를 하는 것이지, '미래 경영진의 결제에 대한 기대와 결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 부채의 결제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구체화 하였고, 전환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종전보다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짐
 - 다만, 일부기업의 경우 보통주 전환옵션의 '자본 또는 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이 개정이 기업의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 등)에 대한 유동성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1)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2020. 2. 28.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0. 3. 2. ~ 2020. 4. 3.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0. 4. 24.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시행일 연기('22.1.1. → '23.1.1.)

- 2020. 8. 28.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20. 9. 1. ~ 2020. 10. 5.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2020. 10. 16.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2020.12.16.)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결론도출근거 개정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문단 69, 73, 74와 76을 개정하였다. 문단 72A, 75A, 76A, 76B와 139U를 추가하였다. 문단 139D를 삭제하였다. 문단 70, 71, 72A와 76A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70, 71, 72와 75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읽기 쉽도록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구조와 내용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영업주기(문단 69(1))

-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2))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3)) 경우

71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74와 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72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역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73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아~~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대역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 그러나 대역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3), 76(4)).

76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1)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 (2)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 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 (3)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 (4)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결제 (문단 69(1), 69(3), 69(4))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1) 또는 (2)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 (2)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D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9U 2020년 x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0. 4. 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김영석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0. 10. 16.)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8L~BC38P과 문단 BC38L 위의 제목이 삭제되었다. 문단 BC39 위의 제목은 새로운 제목과 소제목으로 대체되었다. 문단 BC48A~BC48H가 추가되었고, 문단 BC48A와 BC48F 위에 제목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 대한 분류(문단 69)

BC38L-BC38P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문단 69~76)

유동부채(문단 69~76B)

보고기간후사건의 효과(문단 69~76)

BC39 IAS 1(1997년에 발표) 문단 63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이자부부채를 계속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 (1)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다.
- (2) 기업이 그 의무를 장기로 차환하려는 의도가 있다.
- (3)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완료된 차환약정이나 지급기일 재조정 약정으로 그러한 의도가 뒷받침된다.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76)

BC48A 문단 69(4)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IASB는 이 분류 원칙과 문단 73~76의 관련 적용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요구하는 문단 69(4)와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73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개정하였다.

BC48B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문단 69(4)의 분류 원칙과 문단 73의 예시에 명시하였다. 보고기간말 현재 그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문단 74와 75의 예시에 설명되어 있었으나 분류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BC48C IASB는 또한 분류 원칙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IASB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는 부채에 대해 논의하는 문단 73을 개정하였다. IASB는 문단 73에서 이러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채를 연장할 권리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IASB는 문단 73에서 '재량권'을 '권리'로 대체하여 용어를 일치시켰다.

(2) IASB는 문단 75A를 추가하여 부채의 분류가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BC48D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무조건적일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차입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조건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종 계약사항(covenants)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 그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문단 69(4)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2) 기업에게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다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72A를 추가하였다.

(가)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나)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BC48E IASB는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기업의 누적 재무성과 (예: 이익)와 관련하여 조건의 준수 여부를 경영진이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말까지 기업의 실제 성과와 더 긴 기간에 요구되는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두 가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중 하나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단일의 방법이 일부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결제(문단 76A-76B)

BC48F 문단 BC48A~BC48E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을 개발하면서, IASB는 기존의 대출계약에 따라 부채가 연장되는 경우에 '결제'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부채의 연장은 어떠한 경제적자원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부채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로 정의되고 일부 유형의 부채는 현금이 아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수행의무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 IASB는 '결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단 76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48G 결제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IASB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즉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09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69(4)에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의 효과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기 결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채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BC48H IASB는 2009년에 계약 상대방의 전환옵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주계약인 부채에서 분리하여 인식된 전환옵션을 포함하는 부채에만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의도했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더 나아가 그 밖의 경우, 즉 IAS 32에 따라 지분상품을 이전할 의무가 부채나 부채의 일부로 분류되는 경우에, 지분상품의 이전은 유동·비유동 분류를 위한 부채의 결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기 위해, IASB는 계약 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내용을 문단 69(4)에서 새로운 문단 76B로 옮기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105F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105FA~BC105FC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과 관련 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IAS 1 개정)

BC105FA 2020년 1월에 IASB는 문단 BC48A~BC48H에 기술된 이유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IASB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 이 개정 사항을 기업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은 이러한 분류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대출 약정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지연시키고 재협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이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함으로써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여전히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BC105FB IASB는 시행일의 연기로 인해, 이 개정을 통해 의도했던 부채의 분류 방법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부채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시행일을 연기함에 따른 장점이 단점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C105FC IASB는 개정의 일환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할지 고려하였으나, 기업이 IAS 8 문단 30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 8 문단 30에서는 2020년 1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본문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p>Paragraphs 69, 73, 74 and 76 are amended. Paragraphs 72A, 75A, 76A, 76B and 139U are added. Paragraph 139D is deleted. Headings are added before paragraphs 70, 71, 72A and 76A. Paragraphs 70, 71, 72 and 75 are not amended, but are included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p>	<p>문단 69, 73, 74와 76을 개정하였다. 문단 72A, 75A, 76A, 76B와 139U를 추가하였다. 문단 139D를 삭제하였다. 문단 70, 71, 72A와 76A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70, 71, 72와 75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읽기 쉽도록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p>
Structure and content	구조와 내용
<p>...</p> <p>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p> <p>...</p> <p>Current liabilities</p> <p>69 An entity shall classify a liability as current when:</p> <p>(a) it expects to settle the liability in its normal operating cycle;</p> <p>(b) it holds the liability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rading;</p> <p>(c) the liability is due to be settled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or</p> <p>(d) it does not have an unconditional <u>the righ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u> to defer settlement of the liability for at</p>	<p>...</p> <p>재무상태표</p> <p>...</p> <p>유동부채</p> <p>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p> <p>(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p> <p>(4) <u>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u>(문단 73 참조). 계약 상태</p>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p>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see paragraph 73). Terms of a liability that could, at the option of the counterparty, result in its settlement by the issue of equity instruments do not affect its classification.</p> <p>An entity shall classify all other liabilities as non-current.</p>	<p>밖의 선택에 따라, 자본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u>Normal operating cycle (paragraph 69(a))</u></p> <p>70 Some current liabilities, such as trade payables and some accruals for employee and other operating costs, are part of the working capital used in the entity’s normal operating cycle. An entity classifies such operating items as current liabilities even if they are due to be settled more tha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The same normal operating cycle applies to the classification of an entity’s assets and liabilities. When the entity’s normal operating cycle is not clearly identifiable, it is assumed to be twelve months.</p>	<p><u>정상영업주기(문단 69(1))</u></p> <p>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p>
<p><u>Hel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rading (paragraph 69(b)) or due to be settled within twelve months (paragraph 69(c))</u></p> <p>71 Other current liabilities are not settled as part of the normal operating cycle, but are due for settl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or hel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rading. Examples are some financial liabilitie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held for trading in IFRS 9, bank overdrafts, and the current portion of non-current financial</p>	<p><u>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2))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3)) 경우</u></p> <p>71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p>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p>liabilities, dividends payable, income taxes and other non-trade payables. Financial liabilities that provide financing on a long-term basis (ie are not part of the working capital used in the entity's normal operating cycle) and are not due for settlement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are noncurrent liabilities, subject to paragraphs 74 and 75.</p>	<p>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74와 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p>
<p>72 An entity classifies its financial liabilities as current when they are due to be settled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even if:</p> <p>(a) the original term was for a period longer than twelve months; and</p> <p>(b) an agreement to refinance, or to reschedule payments, on a long-term basis is completed after the reporting period and before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authorised for issue.</p>	<p>72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1)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p> <p>(2)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p>
<p><u><i>Right to defer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paragraph 69(d))</i></u></p> <p>72A <u>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a liability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must have substance and, as illustrated in paragraphs 73-75, must exis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f the right to defer settlement is subject to the entity complying with specified conditions, the right exis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ly if the entity complies with those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he entity must comply with the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even if the lender</u></p>	<p><u>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u></p> <p>72A <u>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역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u></p>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p><u>does not test compliance until a later date.</u></p>	
<p>73 If an entity expects, and has the <u>discretion, righ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u> to refinance or roll over an obligation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under an existing loan facility, it classifies the obligation as non-current, even if it would otherwise be due within a shorter period. However, when refinancing or rolling over the obligation is not at the discretion of the entity (for example, there is no arrangement for refinancing) <u>If the entity has no such right,</u> the entity does not consider the potential to refinance the obligation and classifies the obligation as current.</p>	<p>73 기업이 <u>보고기간말 현재</u>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u>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권리가 있다면,</u>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만약 기업에 <u>그러한 권리가 없다면,</u>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p>
<p>74 When an entity breaches a <u>provision condition</u> of a long-term loan arrangement on or before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with the effect that the liability becomes payable on demand, it classifies the liability as current, even if the lender agreed, after the reporting period and before the authoris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issue, not to demand payment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An entity classifies the liability as current because,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t does not have <u>an unconditional the</u> right to defer its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at date.</p>	<p>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u>대역자가</u>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p>
<p>75 However, an entity classifies the liability as non-current if the lender agreed by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o provide a period of grace ending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within which the</p>	<p>75 그러나 대역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역자가</p>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entity can rectify the breach and during which the lender cannot demand immediate repayment.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 <u>Classification of a liability is unaffected by the likelihood that the entity will exercise it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the liability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If a liability meets the criteria in paragraph 69 for classification as non-current, it is classified as non-current even if management intends or expects the entity to settle the liability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or even if the entity settles the liability between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and the date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authorised for issue. However, in either of those circumstances, the entity may ne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timing of settlement to enable users of its 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liability on the entity's financial position (see paragraphs 17(c) and 76(d)).</u>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3), 76(4)).
76 In respect of loans classified as current liabilities, if <u>If</u> the following events occur between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and the date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authorised for issue, those events are disclosed as non-adjusting events in accordance with IAS 10 <i>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i> (a) <u>refinancing on a long-term basis of a liability classified as current (see paragraph 72);</u> (b) <u>rectification of a breach of a long-term loan arrangement classified as current (see paragraph 74);</u> and	76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1) <u>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u> (2) <u>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u>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p>(c) the granting by the lender of a period of grace to rectify a breach of a long-term loan arrangement ending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classified as current (see paragraph 75); and</p> <p>(d) settlement of a liability classified as non-current (see paragraph 75A).</p>	<p>(3)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u>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u>(문단 75)</p> <p>(4)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u>결제한 경우</u>(문단 75A)</p>
<p><i>Settlement (paragraphs 69(a), 69(c) and 69(d))</i></p> <p>76A For the purpose of classifying a liability as current or non-current, settlement refers to a transfer to the counterparty that results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liability. The transfer could be of:</p> <p>(a) cash or other economic resources – for example, goods or services; or</p> <p>(b) the entity's own equity instruments, unless paragraph 76B applies.</p>	<p><u>결제</u> (문단 69(1), 69(3), 69(4))</p> <p>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u>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1) 또는 (2)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u></p> <p>(1) <u>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u></p> <p>(2) <u>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u></p>
<p>76B Terms of a liability that could, at the option of the counterparty, result in its settlement by the transfer of the entity's own equity instruments do not affect its classification as current or non-current if, applying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the entity classifies the option as an equity instrument, recognising it separately from the liability as an equity component of a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p>	<p>76B <u>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p>
<p>Transition and effective date</p> <p>...</p> <p>139D [Deleted]</p>	<p>시행일과 경과규정</p> <p>...</p> <p>139D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p>

Amendments to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	K-I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
<p>139U <u>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u>, issued in January 2020 amended paragraphs 69, 73, 74 and 76 and added paragraphs 72A, 75A, 76A and 76B.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p>	<p>139U 2020년 x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p>

결론도출근거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Paragraphs BC38L-BC38P and the heading above paragraph BC38L are deleted. The heading above paragraph BC39 is replaced by a new heading and sub-heading. Paragraphs BC48A-BC48H are added and headings are added above paragraphs BC48A and BC48F.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p>	<p>문단 BC38L~BC38P과 문단 BC38L 위의 제목이 삭제되었다. 문단 BC39 위의 제목은 새로운 제목과 소제목으로 대체되었다. 문단 BC48A~BC48H가 추가되었고, 문단 BC48A와 BC48F 위에 제목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p>
<p>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p> <p>...</p> <p>Classification of the liability component of a convertible instrument (paragraph 69)</p> <p>BC38L-BC38P [Deleted]</p>	<p>재무상태표</p> <p>...</p> <p>전환상품의 부채요소에 대한 분류(문단 69)</p> <p>BC38L-BC38P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위원회에서 삭제함]</p>
<p><u>Effect of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on the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paragraphs 69-76)</u></p> <p><u>Current liabilities (paragraphs 69-76B)</u></p> <p><u>Effect of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paragraphs 69-76)</u></p> <p>BC39 ...</p>	<p>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문단 69~76)</p> <p>유동부채(문단 69~76B)</p> <p>보고기간후사건의 효과(문단 69~76)</p> <p>BC39 ...</p>
<p><u>Right to defer settlement for at least twelve months (paragraphs 69(d) and 72A-76)</u></p> <p>BC48A Paragraph 69(d) specifies that, to classify a liability as non-current,</p>	<p><u>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4), 72A~76)</u></p> <p>BC48A 문단 69(4)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고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an entity must have the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the liability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 In January 2020, the Board amended aspects of this classification principle and related applica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s 73-76. The Board made the amendments in response to a request to reconcile apparent contradictions between paragraph 69(d) – which required an ‘unconditional right’ to defer settlement – and paragraph 73 – which referred to an entity that ‘expects, and has the discretion, to’ refinance or roll over an obligation.</p>	<p>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IASB는 이 분류 원칙과 문단 73~76의 관련 적용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요구하는 문단 69(4)와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73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개정하였다.</p>
<p>BC48B The Board added to the classification principle in paragraph 69(d) and the example in paragraph 73 clarification that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must exis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The need for the right to exis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was already illustrated in the examples in paragraphs 74 and 75 but was not stated explicitly in the classification principle.</p>	<p>BC48B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문단 69(4)의 분류 원칙과 문단 73의 예시에 명시하였다. 보고기간말 현재 그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문단 74와 75의 예시에 설명되어 있었으나 분류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p>
<p>BC48C The Board also observed that the classification principle requires an assessment of whether an entity has the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a liability and not whether the entity will exercise that right. Accordingly: (a) the Board amended paragraph 73, which discusses liabilities an entity has a right to roll over for at least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p>	<p>BC48C IASB는 또한 분류 원칙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IASB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는 부채에 대해 논의하는 문단 73을 개정하였다. IASB는 문단 73에서 이러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period. The Board deleted from paragraph 73 a suggestion that to classify such a liability as non-current, an entity must not only have the right to roll over the liability but also expect to exercise that right. The Board also aligned the terminology by replacing 'discretion' with 'right' in paragraph 73.</p> <p>(b) the Board added paragraph 75A, which explicitly clarifies that classification is unaffected by management intentions or expectations, or by settlement of the liability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reporting period.</p>	<p>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채를 연장할 권리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IASB는 문단 73에서 '재량권'을 '권리'로 대체하여 용어를 일치시켰다.</p> <p>(2) IASB는 문단 75A를 추가하여 부채의 분류가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p>
<p>BC48D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needs to be unconditional. The Board noted that rights to defer settlement of a loan are rarely unconditional – they are often conditional on compliance with covenants. The Board decided that if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a liability is subject to the entity complying with specified conditions, the entity has a right to defer settlement of the liability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if it complies with those conditions at that date. Accordingly, the Board:</p> <p>(a) deleted the word 'unconditional' from the classification principle in paragraph 69(d); and</p>	<p>BC48D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무조건적일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차입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조건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종 계약사항(covenants)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 그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p> <p>(1) 문단 69(4)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b) <u>added paragraph 72A to clarify that if an entity’s right to defer settlement is subject to compliance with specified conditions:</u></p> <p>(i) <u>the right exist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nly if the entity complies with those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and</u></p> <p>(ii) <u>the entity must comply with the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even if the lender does not test compliance until a later date.</u></p>	<p>(2) <u>기업에게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다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72A를 추가하였다.</u></p> <p>(가) <u>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u></p> <p>(나) <u>비록 대역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u></p>
<p><u>BC48E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o specify how management assesses an entity’s compliance with a condition relating to the entity’s cumulative financial performance (for example, profit) for a period extending beyond the reporting period. The Board concluded that comparing the entity’s actual performance up to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with the performance required over a longer period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one of these measures would have to be adjusted to make the two comparable. However, the Board decided not to specify a method of adjustment because any single method could be inappropriate in some situations.</u></p>	<p><u>BC48E IASB는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기업의 누적 재무성과(예: 이익)와 관련하여 조건의 준수 여부를 경영진이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말까지 기업의 실제 성과와 더 긴 기간에 요구되는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두 가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중 하나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단일의 방법이 일부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u></p>
<p style="text-align: center;">Settlement (paragraphs 76A-76B)</p>	<p style="text-align: center;">결제(문단 76A-76B)</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u>BC48F</u> While developing the amendments discussed in paragraphs BC48A-BC48E,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a liability is ‘settled’ when it is rolled over under an existing loan facility. The Board concluded that rolling over a liability does not constitute settlement because it is the extension of an existing liability, which does not involve any transfer of economic resources. The Board also observed that a liability is defined as an obligation ‘to transfer an economic resource’ and that some types of liabilities are settled by transferring economic resources other than cash. For example, performance obligations within the scope of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re settled by transferring promised goods or services. The Board decided it would be helpful to clarify those aspects of the meaning of the term ‘settlement’ and so added paragraph 76A.</p>	<p><u>BC48F</u> 문단 BC48A~BC48E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을 개발하면서, IASB는 기존의 대출계약에 따라 부채가 연장되는 경우에 ‘결제’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부채의 연장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부채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로 정의되고 일부 유형의 부채는 현금이 아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수행의무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 IASB는 ‘결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단 76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p>
<p><u>BC48G</u> While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term settlement, the Board also considered liabilities an entity will or may settle by issuing its own equity instruments or, in other words, by converting the liability to equity. In <i>Improvements to IFRSs</i> issued in 2009, the Board had added to paragraph 69(d) a statement that ‘terms of a liability that could, at the option of the counterparty, result in its settlement by the issue of equity instruments do not affect its classification’. The effect of this</p>	<p><u>BC48G</u> 결제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IASB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즉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09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69(4)에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의 효과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기 결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statement is that a bond that the holder may convert to equity before maturity is classified as current or non-current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bond, withou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arlier settlement by conversion to equity.</p>	<p><u>사채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다.</u></p>
<p>BC48H <u>The Board concluded that, when it had added the statement about counterparty conversion options in 2009, it had intended the statement to apply only to liabilities that include a counterparty conversion option that meets the definition of an equity instrument and, applying IAS 32 <i>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i>, is recognised separately from the host liability as the equity component of a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 The Board further concluded that, in other cases—that is, if an obligation to transfer equity instruments is classified applying IAS 32 as a liability or part of a liability—the transfer of equity instruments would constitut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for the purpose of classifying it as current or non-current. To reflect those conclusions, the Board moved the statement about counterparty conversion options from paragraph 69(d) to new paragraph 76B and clarified its scope.</u></p>	<p>BC48H <u>IASB는 2009년에 계약 상대방의 전환옵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주계약인 부채에서 분리하여 인식된 전환옵션을 포함하는 부채에만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의도했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더 나아가 그 밖의 경우, 즉 IAS 32에 따라 지분상품을 이전할 의무가 부채나 부채의 일부로 분류되는 경우에, 지분상품의 이전은 유동·비유동 분류를 위한 부채의 결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기 위해, IASB는 계약 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내용을 문단 69(4)에서 새로운 문단 76B로 옮기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u></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After paragraph BC105F, a new heading and paragraphs BC105FA - BC105FC are added. These paragraphs and their related heading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p>	<p>문단 BC105F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105FA~BC105FC를 추가하였다. 이 문단과 관련 제목은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Amendments to IAS 1)</p> <p>BC105FA In January 2020 the Board issued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for the reasons described in paragraphs BC48A - BC48H. When issued, those amendments had an effective date of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2. Subsequently, the Board not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pressures that could make it more challenging to implement any changes in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se amendments. The pressur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could also delay the start and extend the duration of any renegotiation of loan covenants resulting from those changes. Consequently, the Board decided to provide entities with operational relief by deferring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s by one year to annual reporting</p>	<p style="text-align: center;">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IAS 1 개정)</p> <p>BC105FA 2020년 1월에 IASB는 문단 BC48A~ BC48H에 기술된 이유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IASB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 이 개정 사항을 기업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은 이러한 분류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대출 약정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지연시키고 재협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이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함으로써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여전히 조기적용을 허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i></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수정</p>
<p>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Earlier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continues to be permitted.</p>	
<p>BC105FB The Board noted that deferring the effective date would delay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rovements to the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that the amendments intend to bring about. However, the amendments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presentation of liabilities instead of fundamentally changing the required accounting; recognition and measurement requirements are unaffected by the amendments. Consequently,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advantages of a deferral during a time of significant disruption would outweigh the disadvantages.</p>	<p>BC105FB IASB는 시행일의 연기로 인해, 이 개정을 통해 의도했던 부채의 분류 방법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부채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시행일을 연기함에 따른 장점이 단점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p>
<p>BC105FC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o introduce disclosure requirements as part of the amendment but concluded that this was unnecessary because an enti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paragraph 30 of IAS 8. Application of that paragraph requires disclosure of known or reasonably estimable information relevant to assessing the possible impact of th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issued in January 2020 on an entity’s financial statements.</p>	<p>BC105FC IASB는 개정의 일환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할지 고려하였으나, 기업이 IAS 8 문단 30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 8 문단 30에서는 2020년 1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